교직원 윤리규정

제정 2023, 02, 09,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가치판단과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윤리적 도덕성을 확립하고, 윤리적 도덕성의 결여에서 초래될 수 있는 각종 불미스러운 결과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의 교원과 직원, 조교, 산학협력단 임직원 및 그 밖의 총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사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3조(성실한 직무수행)** 교직원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다.
- 제4조(품위유지 등) ①교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며, 성폭력·폭행 기타 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교직원의 성폭력 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외에는 「상지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에 의한다.
- 제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연구윤리 및 교육윤리, 직무윤리, 성폭력 문제 등에 관해 따로 개별 규정을 두는 경우, 그 규정은 이 규정에 기초한 것으로 본다.

제2장 연구 및 교육윤리

- 제6조(연구 윤리 준수) ①교직원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자료의 중복사용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또한 타인에게 위의 행위를 제안·강요하거나 이를 하도록 협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교직원은 학생의 연구윤리 준수 및 학문적 진실성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연구 부정행위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는 외에는 「연구윤리위원회규정」에 의한다.
- 제7조(교육 및 지도 윤리 준수) ①교직원은 자신의 과목을 수강하거나 지도를 받는 학생을 동 등한 인격체로 대하여야 한다.
 - ②교직원은 강의와 지도의 본분을 벗어나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실험 윤리

제8조(생명윤리 및 동물 실험 윤리 준수) ①교직원은 인간 및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

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제반 윤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윤리 준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외에는 「생명윤리심의 위원회 규정」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제4장 직무 윤리

- 제9조(특혜의 배제) 교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인종·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알선·청탁 금지) ①교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교직원의 공 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②교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교직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인사 청탁 등 금지) ① 교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교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교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교직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관한 규정 제4조」에서 정한 조사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공익신고 조사기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조사기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총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 제13조(이권개입 등 금지) 교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금품 수수의 제한) 교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사회통념상의 의례적인 선물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재산상 이익의 제공 금지) 교직원은 학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관련자 등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재산의 사적사용· 수익 금지) 교직원은 학교의 교육, 연구, 사무용을 포함한 일체의 유형적 재산과 직무발명 결과물,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일체의 무형적 재산을 정당한 절차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교직원은 학교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관한 입찰절차의 진행,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에 있어서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교직원은 전항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재산 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정보·재무의 투명한 관리

- 제18조(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교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여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9조(정보의 누설 금지) 교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정보의 공개)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교직원은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외관계의 신뢰성을 구축할 수 있도록 언론 및 일반인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대하여야 한다.
-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교직원은 연구비·출장비·업무추진비·실습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학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투명한 회계관리) 교직원은 회계서류, 기타 재무 관련 서류를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제7장 기타

- 제23조(윤리규정의 운영) ①총장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이 규정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운영하여야 한다.
 - ②총장은 이 규정 운영을 위하여 별첨 윤리강령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24조(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①구성원 또는 이해관계 당사자는 특정 구성원의 특정행위에 대하여 윤리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나 진상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고절차와 처리는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지대학교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기획예산팀-281, 2023.02.0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윤리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상지대학교 교직원 유리강령

〈전문〉

상지대학교는 인재 양성을 위해 뜻을 모은 지역 인사들의 노력으로 1955년 설립된 영서지역 최초의 고등교육 기관입니다. 참되고 창의적이며 더불어 사는 지성을 교훈으로 바른 뜻을 숭상하는 정신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시대가 요청하는 인본주의 정신에 입각한 실천으로 지행합일을 추구하고, 민주주의와 환경주의를 추구하는 지역중심 대학으로 지난 70여 년 동안 치악산의 기상을 품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인재를 배출해왔습니다.

상지대학교의 교육은 민주주의에 기초한 시민교육을 통해 건강한 민주시민을 육성하고, 환경주의 교육을 통해 미래사회의 변화와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제 우리는 민주적 거버넌스 기반의 전환기를 거쳐 FIND 교육혁신과 특성화를 통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교육기관으로서 상지대학교는 창의적, 혁신적 관점과 개방적 역량을 갖춘 실천적 인재를 육성하여 대학이 갖는 시대적 소명에 부응할 것입니다. 또한, 학술연구의 거점으로서 상지대학교는 엄정한 윤리적 규준을 준수하면서 최상의 연구 성과를 창출할 것입니다. 나아가 사회봉사의 주체로서 상지대학교는 차별과 소외의 영역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나눔의 실천을 통해 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상지대학교는 이러한 책무를 자임하기 위해서 학교 구성원 스스로 윤리적 주체로서 타자에 대한 공감과 배려에 바탕을 두고 냉철한 자기성찰을 선행해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대학공동체 안에서도 각 구성원의 책임과 역할, 인간관계 등에서 합리적이고 건강한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구성원들은 정립된 윤리적 가치와 행동 규범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구성원들은 바른 뜻을 숭상하는 진리 탐구의 의지를 모아 상지대학교 윤리헌장을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교원 윤리강령〉

상지대학교 교원은 진리를 추구하고 지식을 창출하는 학자로서, 국가와 인류 사회에 필요한 인 재를 양성하는 교육자로서, 대학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시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행위 규범을 지향한다.

첫째, 교원은 지식 진보의 이상과 가치를 깊이 확신하면서 창의적인 연구 활동에 매진해야 한다. 교원은 연구자로서의 지적 정직성과 자기 규율을 유지하고 학문 탐구의 자유와 다양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둘째, 교원은 강의와 학생 지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교원은 학생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으며, 학생의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 교원은 학생 평가에 공정성을 기하며, 학생의 학문적 보조에 대해 그 가치를 정해야 한다.

셋째, 교원은 대학의 명예와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 교원은 학문의 자유를 제약받지 않는 한 대학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학사행정에 협조해야 한다. 교원은 외부활동을 고려할 때 학내에서의 책임을 우선해야 한다.

넷째, 교원은 학문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동료 교수의 자유로운 연구를 존중해야 하며, 업적을 평가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교원은 동료를 차별하여서는 안 되며, 동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성적으로 희롱하는 언행을 일체 삼가야 한다.

〈직원 윤리강령〉

상지대학교 직원은 대학 행정을 실행하는 전문 인력으로서, 국가와 인류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행위 규범을 지향 한다.

첫째, 직원은 교육이념과 비전을 공유하며, 우리 대학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따라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직원은 교육행정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의 전문성 함양은 물론, 지속적인 자기 계발을 통하여 업무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둘째, 직원은 대학 행정의 주축으로서 전문 직업의식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인재를 키워내기 위한 최상의 교육환경과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데이바지하여야 한다.

셋째, 직원은 대학 구성원에게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항상 공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넷째, 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대학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직원은 사회에서 바라는 청렴성을 갖춰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섯째, 직원은 대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대내외 활동에 있어 항상 모범적인 자세를 견지하여 야 한다.